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127호

「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국내 물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고속도로 인근 물류시설 확충을 추진함에 있어, 도로교통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류시설 설치 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연접지역 정의를 '유료도로에 직접 연결된 지역'에서 '직접 연결된 지역이거나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의 접속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'으로 변경(안 제11조의3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 
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
- 전화 : 044-201-3877, 3880 / 팩스 : 044-201-5588